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가단1458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2. 1. 14.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별지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46,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1 목록 기재 제4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7. 12.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7,001,667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11. 25.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70,000,000원(그 후 153,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11. 25.(그 후 2018. 11. 23.까지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8. 12. 18. 원고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및 성과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소외 회사는 2017. 12. 19. 이자연체로 인하여 C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6. 4. C은행에 대출원리금 157,310,491원(= 원금 153,000,000원 + 이자 4,310,4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1,009,380원, 2018. 6. 5. 30,953원을 각 회수하여 미회수 대위변제금 156,270,158원이 남아 있다.

2) 원고는 2018. 7.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37514호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57,150,390원 및 그 중 156,270,158원에 대하여 2018. 6. 4.부터 2018. 9. 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9.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1) 경기 양평군 D, E, F(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550/1,730 지분에 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7. 7. 21. 주식회사 H이 각 220/2,076 지분, 소외 회사가 각 220/2,076 지분(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I이 각 165/2,076 지분, 피고가 각 55/2,076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2) 서산시 J, K, L, M, N, O, P, Q, R(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92/5,492 지분에 대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S 강제경매 사건에서, 2017. 8. 18. 주식회사 H이 각 2,460/82,380 지분, 소외 회사가 각 1,968/82,380 지분(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12항 기재와 같다), 주식회사 I이 각 2,706/82,380 지분, 피고가 각 246/82,38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2. 15.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12.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1) 이 사건 제1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2019.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T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20. 9. 2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유자(경매로 취득한 55/2,076 지분 +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220/2,076 지분 합계 275/2,076 지분)로

4,558,236원을 배당받았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2019.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U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7. 28.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유자(= 경매로 취득한 246/82,380 지분 +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1,968/82,380 지분 합계 2,214/82,380 지분1))로 7,876,87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0, 2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였고, 그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 중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지분은 각 220/2,076이므로 원고에게 3,646,588원(= 배당금 4,558,236원 × 220/275)을 가액배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기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 중 7,001,667원(= 7,876,876원 × 1,968/2,21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18. 6. 4.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2008. 11. 25. 체결되어 있었고, 2017. 12. 19. 소외 회사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8. 6. 4. C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손해행위 해당 여부

1)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여부

갑 제19, 21호증의 각 기재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893,226원(= 474,728원 + 472,148원 + 474,728원 + 1,421,604원 + 1,421,604원 + 3,695,482원 + 1,930,500원 + 2,806,457원 + 3,584,609원 + 1,991,7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가액(산출근거, 원 미만 버림)
별지 목록 제1항	2,447,977원(=220/2,076 × 감정평가액 23,1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2,447,977원(=220/2,076 × 감정평가액 23,1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2,804,046원(=220/2,076 × 감정평가액 26,460,000원)
별지 목록 제4항	2,077,031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86,944,000원)
별지 목록 제5항	3,158,165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132,200,000원)
별지 목록 제6항	2,684,440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112,370,000원)
별지 목록 제7항	474,728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19,872,000원)
별지 목록 제8항	472,148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19,764,000원)
별지 목록 제9항	474,728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19,872,000원)
별지 목록 제10항	1,421,604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59,508,000원)
별지 목록 제11항	1,421,604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59,508,000원)
별지 목록 제12항	3,695,482원(=1,968/82,380 × 감정평가액 154,692,000원)
춘천시 V 임야 760㎡ 중 429/3,040 지분	1,930,500원(=429/3,040 × 감정평가액 13,680,000원)
경기 가평군 W 임야 769㎡ 중 15,696.25/154,834 지분	2,806,457원(=15,696.25/154,834 × 감정평가액 27,684,000원)
경기 가평군 X 임야 1,105㎡ 중 15,696.25/154,834 지분	3,584,609원(=15,696.25/154,834 × 감정평가액 35,360,000원)
경기 가평군 Y 임야 578㎡ 중 10.135/100 지분	1,991,730원(=10.135/100 × 감정평가액 19,652,000원)

한편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은 C은행에 대하여 180,000,000원, Z에 대하여 265,000,000원 합계 44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 회사도 이러한 기대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시가가 아닌 경매로 취득할 당시 원가 수준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33,893,226원이고, 소극재산은 445,000,000원에 달하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소외 회사가 사업계속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경매나 공매 입찰물건을 공동으로 입찰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 영업의 일환으로 소외 회사와 공동낙찰받은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주 업무(여행업 등)에 매진하고자 공동낙찰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낙찰받은

원가로 매수해주길 요청하였기에, 그에 해당되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정당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당시 소외 회사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484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경매나 공매 입찰물건으로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점, ② 피고는 2017년경 소외 회사를 알게 되어 2017. 8. 8.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각 지분을, 2017. 8. 28.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각 지분을 공동낙찰받기 전에는 소외 회사와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그 거래상대방인 소외 회사로부터 낙찰받을 당시 원가에 소외 회사의 지분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재정상태를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2017. 12. 15.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2,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19.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매매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인 거래라거나 허위의 계약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경매전문업체인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이유가 없고, 경매전문업체가 투자자와

함께 공동낙찰을 받거나 도중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고객에게 원가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 반복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양평군 일야 550㎡
(공유자지분 2076분의 220 주식회사 지분 전부)
2. 경기도 양평군 일야 550㎡
(공유자지분 2076분의 220 주식회사 지분 전부)
3. 경기도 양평군 일야 630㎡
(공유자지분 2076분의 220 주식회사 지분 전부)
4.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2288㎡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5.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3305㎡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6.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3305㎡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7.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552㎡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8.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549㎡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9.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552㎡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10.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1653㎡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11.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1653㎡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12. 충청남도 서산시 일야 4297㎡
(공유자지분 82380분의 1968 주식회사 지분 전부). 끝.

[별지2]

채권의 표시

별지 기재 제4항 내지 제12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기하여,
피고가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원 서산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
원)으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7,876,87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끝.

1) 배당표 기재 지분은 738/27,460이나, 이는 위 지분을 3으로 나눈 것과 같다.